



보도시점 2025. 1.19.(일) 12:00 배포 2025. 1.19.(일) 10:00

## 꿀 같은 신혼,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

- <1탄>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(1.19.)
  - <2탄> 전·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(1.20.)
  - <3탄>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& 공제 혜택 알아보기(1.21.)

-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혼인·출산·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, 그리고 장애인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을 돋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합니다.
- 먼저,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드립니다.
-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'24 ~ '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 \*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.

###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[자주묻는 질문 ①~⑥]

- ①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이월공제 불가)
- ②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, 「맞벌이 근로자 결세안내」로 결세전략을 세워보세요.
- ③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,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·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산후조리원비(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)부터 출산세액공제 (30·50·70만원), 출산지원금 비과세(출생 2년 내, 2회 한도로 전액)도 잊지 마세요.
- ⑤ '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.
- ⑥ 「고용노동법」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

- 
- 이 외에도,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·의료비·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-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.
  - 다만,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·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.
  -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**연말정산 종합안내<sup>1)</sup>**를 참고하시거나, 국세상담센터<sup>2)</sup>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1) [경로] 국세청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⇒ 국세신고안내 ⇒ 개인·법인신고안내 ⇒ **연말정산 종합안내**
- 2) **국번 없이 126 → 0번 → 1번(종합 안내), 2번 (자주 묻는 질문.답변), 0번(상담사 연결)**
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원천세과	책임자	과장	정현미	(044-204-3341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훈	(044-204-3347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	책임자	과장	홍영표	(044-204-4651)
		담당자	사무관	홍덕표	(044-204-4652)
<협조>	국세청 국세상담센터	책임자	센터장	이성호	(064-780-60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재	(064-780-6002)
<협조>	국세청 운영지원과	책임자	과장	최성영	(044-204-2260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훈	(044-204-226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## 자주 묻는 질문

1 '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,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○ 결혼한 근로자는 '24.1.1.~'26.12.31. 사이에 혼인신고<sup>\*</sup>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\*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

2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,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

○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,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.

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 
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 같다면?

(예시) **300만원** 소득공제 시  
**6% 세율** → 세액 **18만원** ↓  
**45% 세율** → 세액 **135만원** ↓

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유리

지출이 많지 않아  
최소지출금액(총급여의 25%)을  
넘기기가 어렵다면?



2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 
총급여 8천만원 이상자는  
공제 불가

총급여가 더 낮은 배우자가 유리

-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,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·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

○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정보·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\* [접근경로] 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 > 편리한 연말정산 >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
**3-1**

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
- '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을 받은 세대주\*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\*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·주택마련저축·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

- 다만,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 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# | 주택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 |

주택소유자	차입자(대출명의자)	공제여부
근로자	근로자	○
근로자	배우자	×
배우자	근로자	×
근로자와 배우자	근로자	○
근로자와 배우자	근로자와 배우자	△*

\*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,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

**3-2**

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,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.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?

-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.

-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·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--

**4** 맞벌이 부부인데 '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?

---

- 부모 중 1명<sup>1)</sup>이 '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(150만원)와 출산 세액공제(첫째 자녀 30만원)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(산후조리원 비용<sup>2)</sup> 포함)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 
1)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, 보험료·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 
2) '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 포함
    - 또한,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\*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<sup>2)</sup>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.
- \* '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'21.1.1.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비과세

---

**5**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,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--

- 홈택스나 손택스(모바일)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--

**자료제공 동의 경로**

---

<b>홈택스(PC)</b>	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
<b>손택스(모바일)</b>	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제공동의 신청

---

- '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.
  -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·보험료·자료\*는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\*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안 발생한 지출액은 공제 가능

---

**6**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?

---

- 배우자가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\*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,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.

\* '24년부터 사립학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

## □ 사실 관계

- 근로자 이연말은 '24.8월에 회사 동료인 김정산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음



이연말

-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'24년 중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하였으며, 결혼 후 김정산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
- '24년 총급여는 6,500만원이며,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2,500만원 수준(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)



김정산

- '24.3월 기준시가 5.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연도 중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600만원임
  - \* 주택 취득 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
- '24.10월에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수술(약 250만원)을 받음
- '24년 총급여는 7,500만원이며,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3,000만원 수준(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)

## □ '24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

- (결혼세액공제) '24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연말과 김정산 각각 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(주택자금공제) 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  
김정산은 '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가능
- (의료비 세액공제)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총급여가 낮은 이연말이 김정산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\*
  - \* 라식수술비 250만원 - [이연말의 총급여 × 3% (195만원)] = 55만원  
(김정산은 총급여의 3%인 215만원을 차감 시 35만원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)

## □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

- (신용카드 등 소득공제) 위 사례의 경우 김정산은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이연말보다 적으므로, 공동 지출은 총급여가 적은 이연말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
  - \*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, 이하자는 300만원